「구미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근한 의원 외 1인

2. 찬 성 자 : 김낙관 의원 외 5인

3. 제안이유

○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민·형사상 소송에 피소되거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○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4조)

○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6조)

○ 소송결과 제출 및 소송비용 반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제8조)

○ 소송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5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
- 「민사소송법」 제98조 및 제110조
- 「형사소송법」 제194조의2
- 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 제16조
- 「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」 제17조의2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소속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, 공직자들이 악성 민원이나 소송의 위험에서 벗어나 소신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지원대상을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, 기간제 근로자, 청원경찰까지 확대하여 행정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인력 전반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하였으며, 퇴직자라도 재직 시 업무와 관련된 소송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책임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음.(제2조)

- 심급별 지원한도를 최대 2,000만원, 총액 6,000만원으로 규정하여,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 산정 기준을 준수함과 동시에 소송절차 전반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으며, 보험

이나 공제회 등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중복과 낭비를 방지함.(제4조, 제5조)

- 또한 민·형사 소송 결과에 따른 반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였고, 적극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과실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반환액을 감면할 수 있는 유연한 구제장치를 마련하는 등(제8조, 별표)

- 정책적 타당성 및 재정적 건전성을 모두 충족하였으며,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 등 상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음.

※ 대법원 판례 :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해 위법한 공무수행이 된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면제(대법원 1996.2.15. 선고95다38677, 대법원 2003.12.26. 선고2003다13307)

- 종합적으로 최근 악성 민원 및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, 소송 부담 없이 오로지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시행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집행기관에서는 조례 시행 시 [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]를 통한 심의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교한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, 소송 결과 보고 및 비용 관리 대장 작성을 철저히 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- 아울러, 소송비용 반환 기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통해 공무원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, 적극행정 문화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체 공무원에 소송비용 지원시책에 대한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